

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2012. 9.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형수 연구기획본부장(장기재정전망센터장)
 김학수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은정 전문연구원
 최영은 연구원

자문진 성시경 서울대 BK 연구단 연구위원
 정하용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조중재 한국투자공사 이코노미스트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약 >

1. 미국의 재정상황

- 연방정부 총채무 8월 31일 16조 달러를 돌파, 9월 12일 현재 16조 463억 달러
 - 1월 27일 법정 채무한도를 1조 2천억 달러 상향조정 한 이후 9월 12일까지 월 평균 1,080억 달러씩 재정적자 발생 하며 약 8,100억 달러 총채무 증가
 - 9월 12일 현재 약 3,500억 달러의 채무증가 여력이 남은 상황
- 8월말 현재 재정적자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6% 축소된 상황이나 재정적자 지속되며 FY2012에도 1조 달러 초과하는 재정적자 발생 전망
 - 재정수입은 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지출의 감소세는 2012년 5월 이후 현저히 둔화
 - 현재의 채무 증가추이로 볼 때 2012년 말 채무한도 증액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
-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국방지출의 증가로 2002년 재정적자로 반전되며 재정 악화가 시작됐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심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일련의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했으나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의 재정적자 감축방안 합의 도출 실패
 -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강제삭감조치 예정
 - CBO는 현행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FY2013 재정적자는 FY2012 대비 약 5,6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건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
 - 반면, 재정 건전화 조치 중 일부만 유보되어도 정부채무와 재정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

2. 대선후보들의 주요 대선 공약과 재정

-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의 조세정책 분야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논쟁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어떤 후보의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
 - (오바마 대통령)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부시감세조치를 연장하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세율은 부시감세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키며 자본이득세와 상속세 과세도 강화하는 한편, 법인세율은 인하하되 법인소득 공제 축소 및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선별적 증세 방안을 제시
 - (롬니 후보) 개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등의 큰 폭의 감세안과 더불어 세수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및 조세허점(tax loophole)을 보완하고 미국 기업들의 해외소득의 송금과 미국내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평가되는 원천지국 과세원칙(territorial tax system)으로 완전 전환할 것을 제시
 -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롬니 후보의 세제개편안을 소득이 높은 경우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진적 개편안으로 평가하고 암묵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개편안을 지지하며 롬니 후보의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수 중립적 감세정책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
 - 이에 대해 Wall Street Journal은 i) 과거 1986년의 감세정책에 대한 CBO와 Martin Feldstein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수중립적 감세정책의 가능성과 효과를 주장하고 ii) 롬니 후보의 공약은 과세기반을 늘리는 것인데 조세정책센터(TPC)가 투자와 저축 관련 조세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임의적으로 가정하여 연구결과의 왜곡을 낳았다고 비판
- 지출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하겠다는 롬니 후보의 공약을 전제한 CBO의 분석결과는 보험료 수입 감소규모가 지출 축소규모를 초과하여 재정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포브스지는 오바마케어의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 증가로 재정적자를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다는 CBO의 분석결과는 건강보험료가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가능하다고 비판
 - 그러나 이러한 경우 '캐딜락세(Cadillac tax)'를 부담해야 하는 개인들이 증가하므로 CBO의 분석에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캐딜락세 영향을 제거하면 건강보험법으로 인한 재정적자에 대한 효과는 상쇄된다고 주장
 - 캐딜락세란 기준보험료 이상의 고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초과된 보험료에 대해서 40% 소비세(excise tax)를 보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무조건적인 감세 또는 정부지출의 증가에 의해 현재의 재정위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미국 재정적자의 합리적 수준을 2.5%로 설정할 경우 2012년 기준 GDP의 3% 수준의 구조적 재정적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
- 이러한 수준의 구조적 재정적자 축소는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2013년 한 해에 시행하기 보다는 중기적으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 예산정책연구소(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는 롬니 후보의 공약이 재정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하원 예산위원회(House Budget Committee)는 현재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 재정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현 정부안보다 3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

3. 미국재정의 향배 및 시사점

- 선거에 의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고 2013년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
- 최근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현재 증가추세의 채무수준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을 미국 의회와 정부가 도출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발표

- 대선일정과 이후의 권력누수 기간을 고려할 때 법정 채무한도를 연말 이전에 상향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재정절벽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신정부 출범 전에 초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
- 채무한도 이외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세입증대와 지출삭감이 요구되지만 명확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치과정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며 재정건전성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양 후보의 공약사항들이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움
-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시나리오가 유력시되고 있어서 또 다시 의회와 행정부의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
 - 공화당이 양원의 다수당으로 확정되면, 예산통제법에 의해 국방지출이 크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통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 입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
- 유로존과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의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정책들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운용기조가 필요하며, 해외 충격에 의한 경제위기 및 남북통일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국가채무의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상향조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도록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돕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이나 선거중립성을 준수하는 평가기구에 의해 각종 선거공약들이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

목차

I. 미국의 재정상황	1
1. 최근 미국 채무수준의 변화	1
2. 미국 재정악화 배경과 오바마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6
3. 오바마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효과	10
가.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른 2013년도 경제·재정 전망	10
나.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른 향후 재정전망	12
II. 대선 후보들의 주요 대선공약과 재정	15
1.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비교	15
2. 주요 공약에 대한 평가	18
가. 조세정책	18
나. 보건·의료부문	22
다. 재정건전성	23
III. 미국 재정의 항배 및 시사점	27
참고문헌	31
<부록 1> 최근 재정건전화 조치	33
<부록 2> Citizens for Tax Justice 분석	35
<부록 3>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상·하원 법안 및 통과법안 비교	38

표목차

<표 I-1> FY2012의 월별 재정현황 비교: 월별 누계기준	1
<표 I-2>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 효과	10
<표 I-3> 정책강도에 따른 2013년 경제성장률(인플레이션조정) 및 취업자 수	11
<표 I-4>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른 장기전망	11
<표 II-1> 2012년 대선후보 주요 경제정책 비교	16
<표 II-2> 대선후보의 개인소득세 개편안 비교	17
<표 II-3> 대선후보의 법인소득세 개편안 비교	17
<표 II-4> 2015년 소득분위별 연방세 부담 변화	19
<표 II-5> 건강보험 개혁법(ACA) 폐지에 따른 재정효과	22

그림목차

[그림 I-1] 최근 연방정부 채무수준과 채무한도 추이	2
[그림 I-2] 재정수지와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추이	8
[그림 I-3] 연방정부 채무 및 총채무 법정한도 추이	8
[그림 I-4] 경제침체 및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9
[그림 I-5]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강도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13
[그림 I-6]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강도에 따른 연방채무 전망	13
[그림 I-7] 재정건전화 정책별 재정수지 전망	14
[그림 II-1] 하원의 재정적자 전망치	26

I. 미국의 재정상황

1. 최근 미국 채무수준의 변화

□ 연방정부 총채무는 2012년 8월 31일 16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9월 12일 현재 16조 463억 달러에 달함

○ 2011년 8월 2일 14조 6,940억 달러로 법정 채무한도를 증액한 이후 2011년 9월과 2012년 1월에 각각 5천억 달러와 1조 2천억 달러 상향 조정하여 현재 16조 3,940억 달러의 채무한도

○ 올해 1월 27일 법정 채무한도를 1조 2천억 달러 상향조정한 이후 9월 12일까지 약 8,100억 달러 채무 증가

- 1월 27일 이후 9월 12일까지 약 7.5개월 동안 월 평균 1,080억 달러씩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국가채무 증가 초래

- 9월 12일 현재 약 3,500억 달러의 채무증가 여유분이 남은 상황

<표 1-1> FY2012¹⁾의 월별 재정현황 비교: 월별 누계 기준

(단위: 10억 달러, %)

	수입			지출			재정적자		
	FY2011	FY2012	증감율	FY2011	FY2012	증감율	FY2011	FY2012	증감율
10월	146.0	163.1	11.7	286.4	261.5	-8.7	140.4	98.5	-29.9
11월	294.9	315.5	7.0	585.7	551.2	-5.9	290.8	235.8	-18.9
12월	531.8	555.4	4.4	900.8	877.2	-2.6	369.0	321.7	-12.8
1월	758.3	789.8	4.1	1,177.1	1,138.9	-3.2	418.8	349.1	-16.6
2월	869.0	893.2	2.8	1,510.3	1,474.0	-2.4	641.3	580.8	-9.4
3월	1,019.9	1,064.4	4.4	1,849.3	1,843.4	-0.3	829.4	779.0	-6.1
4월	1,309.4	1,383.2	5.6	2,179.2	2,103.1	-3.5	869.8	719.9	-17.2
5월	1,484.4	1,563.9	5.4	2,411.8	2,408.4	-0.1	927.4	844.5	-8.9
6월	1,734.0	1,824.1	5.2	2,704.6	2,728.3	0.9	970.5	904.2	-6.8
7월	1,893.1	2,008.7	6.1	2,993.0	2,982.5	-0.4	1,099.9	973.8	-11.5
8월	2,062.3	2,187.5	6.1	3,296.4	3,351.9	1.7	1,234.0	1,164.4	-5.6
9월	2,302.5	-	-	3,599.3	-	-	1,296.8	-	-

주: 1)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9월까지로, FY2012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를 의미함

자료: Department of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Sept. 2012. Table 1을 재구성

-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재정적자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6% 축소된 상황이나 여전히 악화된 재정상황이 지속되며 2012 회계연도에도 1조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 전망
- 2012년 8월말 현재 재정수입 누계는 2조 1,875억 달러로 전년 동월말 누계 대비 6.1%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 누계는 3조 3,519억 달러로 전년 동월말 누계 대비 1.7% 증가한 결과, 재정적자 폭은 전년 동월말 누계 대비 5.6% 축소에 그침
- FY2012 재정수입은 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지출의 전년 대비 감소세는 2012년 5월 이후 현저히 둔화되며 이미 8월말 재정적자 누계가 1조 달러를 넘어섰음
- 미국의 법정 채무한도는 16조 3,940억 달러로 2012년 1월 말 1조 2천억 달러 증액됐으나 현재의 월별 재정적자 추이를 볼 때 대선 직후 2012년 말 채무한도 증액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
- 올 1월 말 채무한도를 현재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월 평균 1,080억 달러씩 증가한 추이가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12월 말에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수준은 16조 4480억 달러 수준에 달하며 채무한도를 넘어설 전망

[그림 1-1] 최근 연방정부 채무수준과 채무한도 추이



자료: Department of Treasury,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가 최소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3년 1월 2일부터 강제삭감조치(sequestration)가 시행될 예정(자세한 내용은 <BOX 1> 참고)
 -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은 강제적 재정지출의 축소와 감세조치들의 종료에 의해 경제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을 일컫고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더불어 경제주체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
-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통제법에 의한 강제삭감조치를 완화 또는 무력화할 대체법안을 입법하고 채무한도를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상존하나 치열한 논란이 예상
 - 9월 7일 앨런 웨스트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국방비 등의 강제삭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통제법에 의한 강제삭감조치를 완화할 ‘국가 안보와 고용보호 법률(H.R. 6365)’을 발의¹⁾
 - 이에 대해 백악관은 9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웨스트 하원의원의 법안은 위험적 요소가 있으며 2013년과 그 이후에 예정된 강제삭감조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²⁾
 - 동 성명서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BOX.1>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BCA) 요약

- ☐ (채무한도 조정) 2011년 예산통제법(BCA)은 연방정부의 국가채무 한도 조정을 위해 대통령과 의회의 협상 결과로 제정된 법률
 - BCA는 최소 2조 1천억 달러에서 2조 4천억 달러까지의 국가채무 한도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

1) National Security and Job Protection Act, H.R. 6365, 112th Congress, 2d Session. (Sept. 7, 2012)
 2)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H.R. 6365-National Security and Job Protection Act, Sept. 12, 2012 (Rep. West, R-FL, and 2 cosponsors)

- 동 법은 즉각적으로 4천억 달러의 국가채무한도를 상향 조정('11.8월)하고, 9월 이후 추가적으로 5천억 달러의 채무한도 상향조정 가능
- 이에 더해, 의회 특별위원회(Super Committee)를 구성하여 '11년 말*까지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하는 것에 따라 1조 2천억~1조 5천억 달러까지 추가 채무한도 상향 조정
 - * '11.11.23일까지 특별위원회 재정적자 감축방안 마련, '11.12.23일까지 동 방안 상·하원 통과
- 또한 '11.12.31일까지 상·하 양원이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개정을 통과시키고 비준을 위해 주정부에 이송하면 1조 5천억 달러 채무상한 조정
- 2조 4천억 달러까지 국가채무를 상향조정할 수 있었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2조 1천억 달러 증액
-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개정 통과, 특별위원회의 1조 2천억 이상의 적자 감축 성공할 경우 1조 5천억 달러까지 채무한도 상향조정 가능

□ (적자감축) 10년간의 회계연도(FY2012~FY2021)에 걸쳐 최소 2조 1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

- 동 법은 향후 10 회계연도 동안 재량지출 한도 설정(한도 초과시 일률삭감 조치 시행) 등의 방안으로 9,170억 달러의 재정적자 축소
- 재량지출한도는 첫 두 회계연도(FY2012, 2013)에는 국방 및 비국방 지출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전체 재량지출에 대해 설정
- 상기 재량지출 한도 설정을 통한 지출삭감 방안과 더불어 의회 특별위원회의 적자감축 방안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 시행
- 향후 10 회계연도 동안 1조 2천억 달러~1조 5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특별위원회가 마련하고 의회가 통과시키면 적자감축 방안 규모만큼 국가채무한도 상향 조정
- 특별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하거나 1조 2천억 달러에 못 미치는 적자감축방안을 마련할 경우 또는 의회가 특별위원회의 방안이 부결될 경우 국가채무 한도는 1조 2천억 달러만 상향조정

- 특별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축방안 합의에 실패하거나 최소 1조 2천억 달러의 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1조 2천억 달러의 강제삭감조치 시행

□ (특위 합의실패 영향) 특별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방안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대다수의 연방부처 및 기관의 예산권한이 '13.1.2일부터 삭감될 예정

○ 강제삭감 조치는 국방지출과 비국방지출에 동일한 비율로 삭감되며, 재량지출 및 법정지출 모두 적용

- 법정지출은 FY2013~FY2021동안 매 회계연도에 대해 일률삭감(sequestration) 조치 시행
- 재량지출은 FY2013에 대해서는 일률삭감 조치, FY2014~FY2021에 대해서는 국방 및 비국방지출로 나누어 재량지출 한도의 하향조정으로 지출삭감
- 다만,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등은 일률삭감 조치에서 제외되며, 메디케어의 일률삭감은 지출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2. 미국 재정악화 배경과 오바마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 현재의 미국 재정악화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에 기인한 재정수입의 감소와 9.11 테러 이후 국방지출의 급증으로 FY2002에 재정적자로 반전되며 시작됐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심화³⁾

□ 부시 행정부('01.1~'09.1, 공화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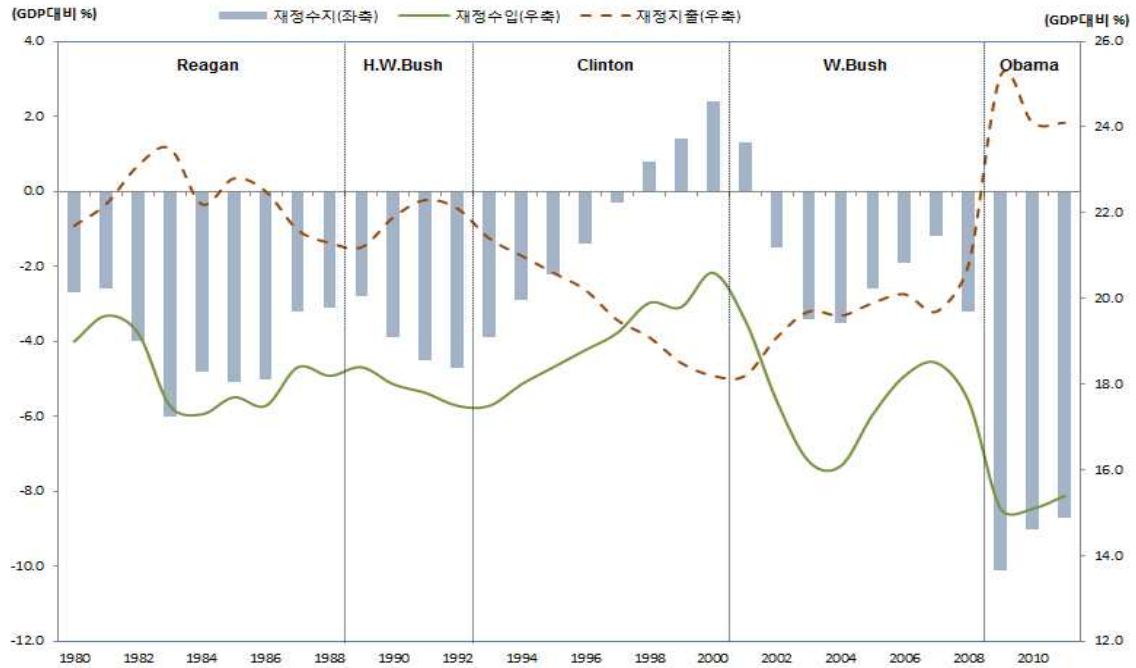
- **경제상황:** IT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 및 9.11테러, 이라크 전쟁 발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악화
- **재정상황:**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감세정책(Bush tax cuts)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9.11테러 이후 국방지출이 급증하면서 FY2002에 재정적자로 전환
 - (재정수지) FY2001에 1.3%였던 재정수지는 FY2002에 재정적자(GDP대비 1.5%)로 전환되고 FY2008에 -3.2%까지 적자폭 확대
 - (채무) 연방정부 채무는 FY2001에 3조 3,196억 달러(GDP대비 32.5%)수준에서 FY2008에 5조 8,031억 달러(GDP대비 40.5%)로 급증하였으며 총채무 법정한도는 7회 상향됨
 - ('97.8) 5조 9,500억 달러 → ('08.10) 11조 3,150억 달러로 한도 증액(5조 3,3650억 달러 상향)
- **추진정책:**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감세조치, 국방비 지출급증,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 **건전화조치:** 2004년도에 “지출통제법안(Spending Control Act; 이하 SCA법안)”을 추진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법제화에 실패
 - 2004년 SCA법안: 재량지출에 대해 6년간 분야별로 지출상한 설정하고 의무지출 통제 위해 PAYGO준칙을 적용했으나 조세법안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장기 암묵적 부채 등 자동세출 프로그램 관련 부채에 대한 통제 강화

3) 2001년 이전의 행정부별 경제·재정상황 및 건전화 조치는 [부록 1]을 참조. 이하의 행정부별 건전화 조치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재정준칙 法制化 노력: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현재까지”에서 인용

□ 오바마 행정부('09.1~현재, 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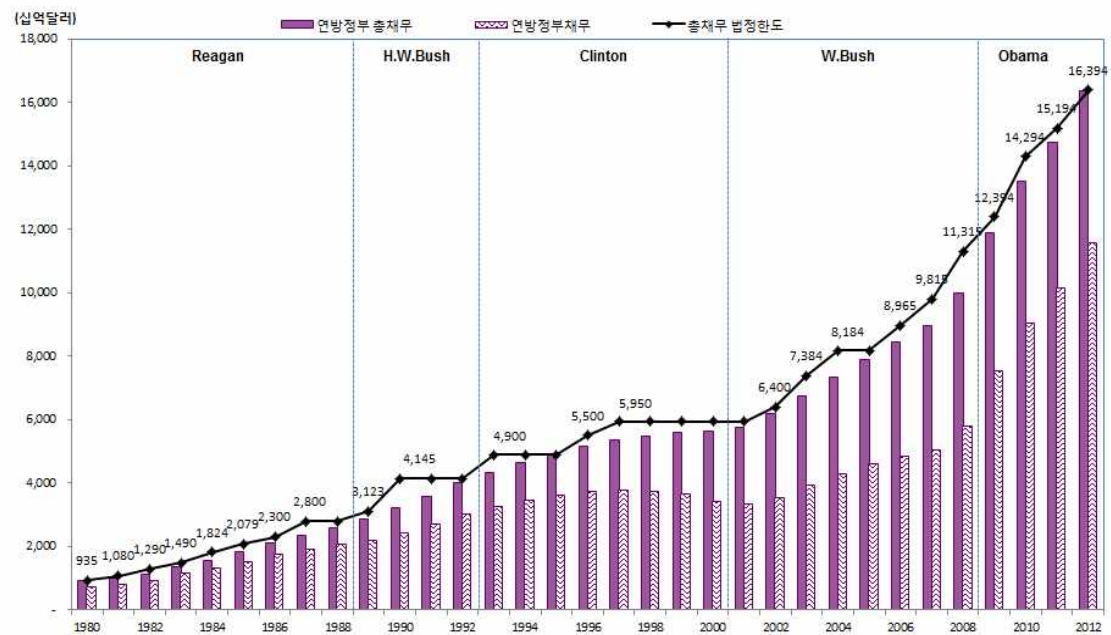
- **경제상황:** 2006년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 침체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불거진 금융위기 및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경제가 급격히 악화
- **재정상황:**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부실자산 매입 및 지급보증,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
 - (재정수지) FY2009의 재정수지가 GDP대비 -10.1%에 달하는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재정적자를 시현
 - (채무) 연방정부 채무는 FY2011에 10조 달러(GDP대비 67.7%)를 넘어서면서 1950년도(GDP대비 80.2%)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총채무 법정 한도 또한 2012년 현재까지 총 6차례 상향됨
 - ('08.10) 11조 3,150억 달러 → ('12.1) 16조 3,940억 달러로 한도 증액(5조 790억 달러 상향)
- **추진정책:** 금융개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건강보험개혁추진
- **건전화조치:** 2010년에 “세출·세입 연계 적자 중립화법(Statutory Pay-As-You-Go Act; 이하 PAYGO법)과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이하 BCA법)을 법제화
 - 2010년 PAYGO법: 의무적 지출과 조세관련 법안은 모두 PAYGO준칙을 적용하고 PAYGO준칙은 영구적으로 적용
 - 2011년 BCA법: 총채무 법정한도 상한 3단계 증액, 재량지출에 대한 지출상한제 도입, 균형예산 의무화 헌법개정안 마련 및 찬반투표 시행,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위원회 설치(자세한 내용은 <BOX 2> 참고)

[그림 1-2] 재정수지와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추이



자료: OMB,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Historical Tables.

[그림 1-3] 연방정부 채무 및 총채무 법정한도 추이



주: 1) 연도말 기준

2) 연방정부 총채무(Gross Federal Debt)는 연방정부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로 구성되며 채무상환을 적용받음

3) 2012년은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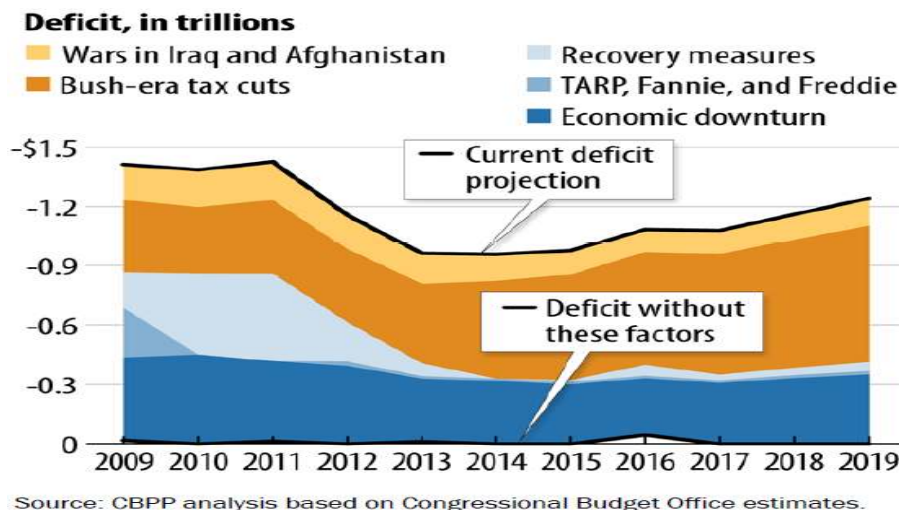
자료: OMB,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Historical Tables.

<BOX 2>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원인

□ FY2009년도에 급증한 재정적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에 기인

- (재정수입) FY2009 재정수입은 2.1조 달러(GDP대비 15.1%)로 전년대비 -2.5%p 감소하였으며 이는 1950년도(GDP대비 14.4%)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재정지출) FY2009 재정지출은 3.5조 달러(GDP대비 25.2%)로 전년대비 4.4%p 증가
 - 2008년 10월 부실자산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 등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 2009년 2월, 향후 10년간 총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 시행
- 민간연구소인 예산정책연구소(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는 경제침체와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대규모 재정적자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
 -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적자는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일시적 요인임
 - CBPP 보고서 발표 당시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은 향후 재정적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2012년도 말에 일몰 종료되므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그림 1-4] 경제침체 및 부시행정부의 정책이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



자료: CBPP, "Special Series : Economic Recovery Watch" (2011. 5. 10)

3. 오바마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의 효과

가.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른 2013년도 경제·재정 전망⁴⁾

□ CBO는 현행 재정건전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FY2013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약 5,600억 달러 감소하지만,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

○ (재정수지) 현행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재정적자는 FY2012의 1조 1,710억 달러에서 FY2013에 6,120억 달러로 약 5,600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금 감면조치 종료에 따른 세입효과는 약 3,990억 달러, 각종 지출억제 정책에 따른 효과는 1,0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

<표 1-2>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 효과

(단위: 10억 달러)

재정건전화 정책	효과
(세입관련 정책)	399
·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감면혜택 종료(2012.12.31) 및 AMT 인플레이션 연계 종료	221
· 급여세(payroll tax)의 근로자 부담분 감면 종료	95
· 기타 감면 조치 종료	65
·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에 포함된 세금	18
(지출관련 정책)	103
·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으로 인한 지출 삭감	65
· 긴급 실업급여 지급 중단	26
· 의사들에 대한 메디케어 의료수가 감축	11
(기타)	
· 기타 세입과 지출 변화	105
· 경기위축 영향	-47
총 변화	560

자료: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CBO (2012.5)

4)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CBO (2012.5) 재구성

- 동 보고서는 "Updated Budget Projections: Fiscal Years 2012 to 2022 (2012.3.13)"의 수치를 근거로 분석

- (단기 경제효과) 단기적으로 현행 정책은 2013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예측치 1.1%(2012.1월)에서 0.5%로 감소시키고 취업자 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 현행 재정긴축 정책을 모두 시행할 경우, 2013년 경제성장률은 연중 약 0.5%로 관련 정책이 전면 유보될 경우의 4.4%보다 3.9%p나 낮음
 - 현행 정책을 모두 유보할 경우, 취업자 수는 200만명 증가하고, 일부만 유보할 경우, 13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표 1-3> 정책강도에 따른 2013년 경제성장률(인플레이션조정) 및 취업자 수

(단위: 전기대비 연률%, 백만명)

		상반기 ¹⁾	하반기 ¹⁾	연중 ¹⁾
성장률	현행 재정긴축정책	-1.3	2.3	0.5
	재정긴축 정책 시행 전면 유보	5.3	3.4	4.4
	긴축조치 일부시행 ²⁾	1.2	2.5	2.1
취업자	재정긴축 정책 시행 전면 유보	1.1	2.9	2.0
	긴축조치 일부시행 ²⁾	0.9	1.8	1.3

주: 1) 상반기 2012.4~2013.2분기, 하반기 2013년.2~4분기, 연중 2012.4~2013.4분기

2) 세제혜택(급여세 감면 제외) 연장, 최저한세(AMT) 인플레이션 연동, 의사들의 의료수가 현행 유지, 예산통제법에 따른 재량지출 삭감 미시행

- (장기 경제효과) 현행 재정긴축이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
 - FY2022까지 재정적자는 FY2012에 GDP 대비 7.6%에서 FY2022에 1.2%, 연방정부 채무는 FY2012에 GDP 대비 73.2%에서 FY2022에 61.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재정 건전화 조치가 일부만 유보되어도 정부채무와 재정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분석

<표 1-4>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른 장기전망

(단위: GDP대비 %)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22	FY2013~FY2022
현행 정책	재정적자	7.6	3.8	2.3	1.5	1.4	1.2	1.4
	연방정부 채무	73.2	75.8	75.8	73.3	70.9	61.3	-
일부 시행	재정적자	7.7	6.3	5.8	5.0	5.0	5.9	5.3
	연방정부 채무	73.3	78.4	81.7	82.4	83.1	93.6	-

나.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른 향후 재정전망⁵⁾

□ CBO는 예산통제법을 토대로 2013년 시행될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까지 재정수지 및 연방채무를 전망

○ FY2013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는 예산통제법에 명시된 재정건전화 정책 중 향후 10년간 9,170억 달러 지출 감축, 부시행정부의 감세조치 중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만을 종료하는 내용으로 전망

○ 2012.8월 보고서는 2013년 시행될 모든 재정건전화 조치들(예산통제법 및 세제개편 등)이 시행됨을 가정하여 전망

- 즉, 예산통제법에 명시된 재정건전화 정책(향후 10년간 9,170억 달러 감축 및 1.2조 달러 자동삭감), 부시 행정부의 감세법 일몰종료 및 세제개편(긴급실업급여 지급기한 연장 종료 및 급여세율 2%p 삭감조치 종료 등), 의사들에 대한 의료수가 감액 등이 모두 시행됨을 전제로 분석

□ 분석 결과

○ (재정적자) FY2013-FY2022 평균 GDP 대비 재정적자는 건전화 조치 전면시행의 경우가 1.1%로 일부 시행(예산안분석)의 3.2%보다 2.1%p 개선

- 전면시행의 경우, 일부시행 때보다 GDP 대비 재정수입이 1.2% 높고, 지출은 0.8% 낮아 재정적자가 10년간 총 2.1%p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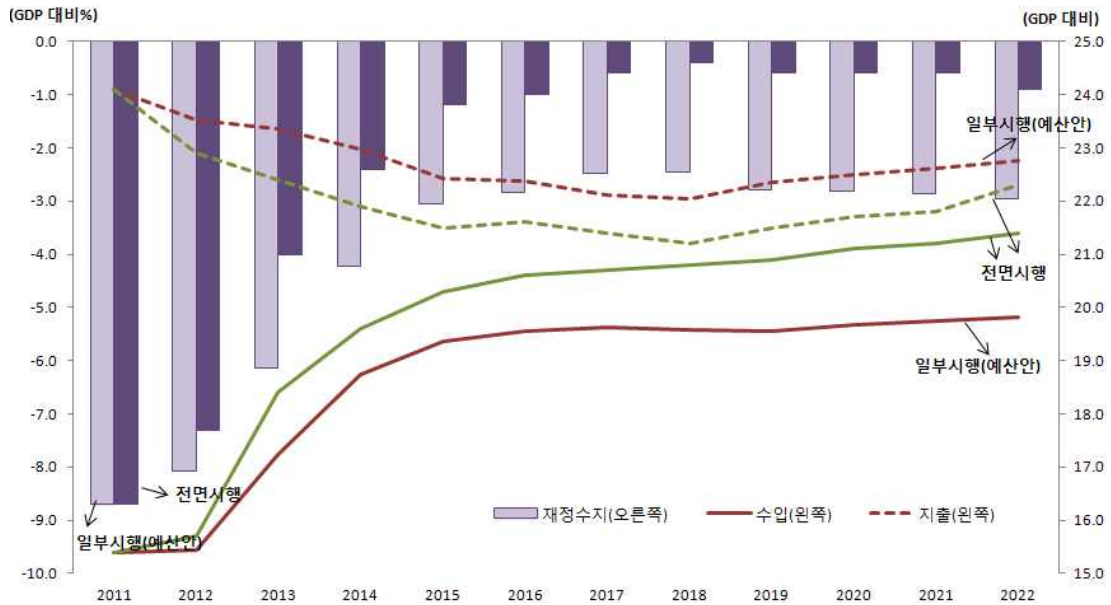
○ (연방채무) 건전화 조치가 전면시행 되면 채무가 감소하지만, 일부 시행될 경우는 시행강도에 따라 부채수준이 현 수준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예산안(정부지출 삭감 및 고소득층 감세 폐지 반영)의 경우, GDP 대비 연방채무는 FY2011에 67.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FY2020부터 76.5%로 유지

- 건전화 조치 중 정부지출 9,170억 달러 감축 조치만을 반영할 경우, GDP 대비 연방채무는 빠르게 증가하여 FY2022에 89.7%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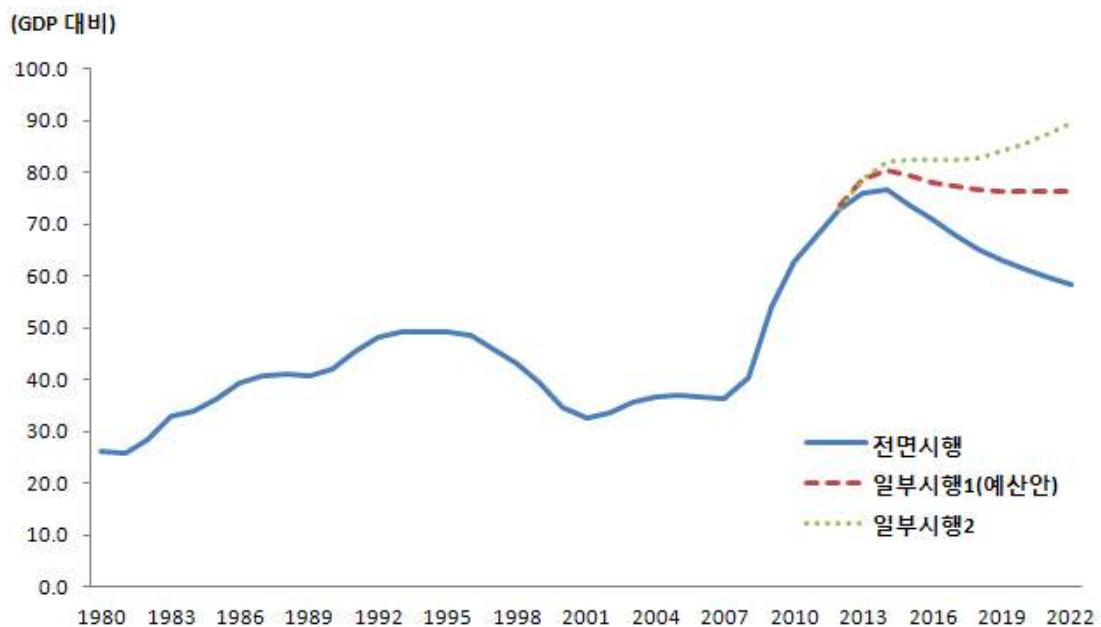
5)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3 Budget" (2012.3.16) 및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2012.8.22)" 재구성

[그림 1-5]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강도에 따른 재정수지 전망



자료: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2012. 8. 22)

[그림 1-6]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강도에 따른 연방채무 전망



주: 일부시행1: 예산안에 포함된 재정건전화 내용(정부지출 삭감 및 고소득층 감세 폐지)만 반영
일부시행2: 정부지출 9,170억달러 감축만 반영

자료: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3 Budget (2012.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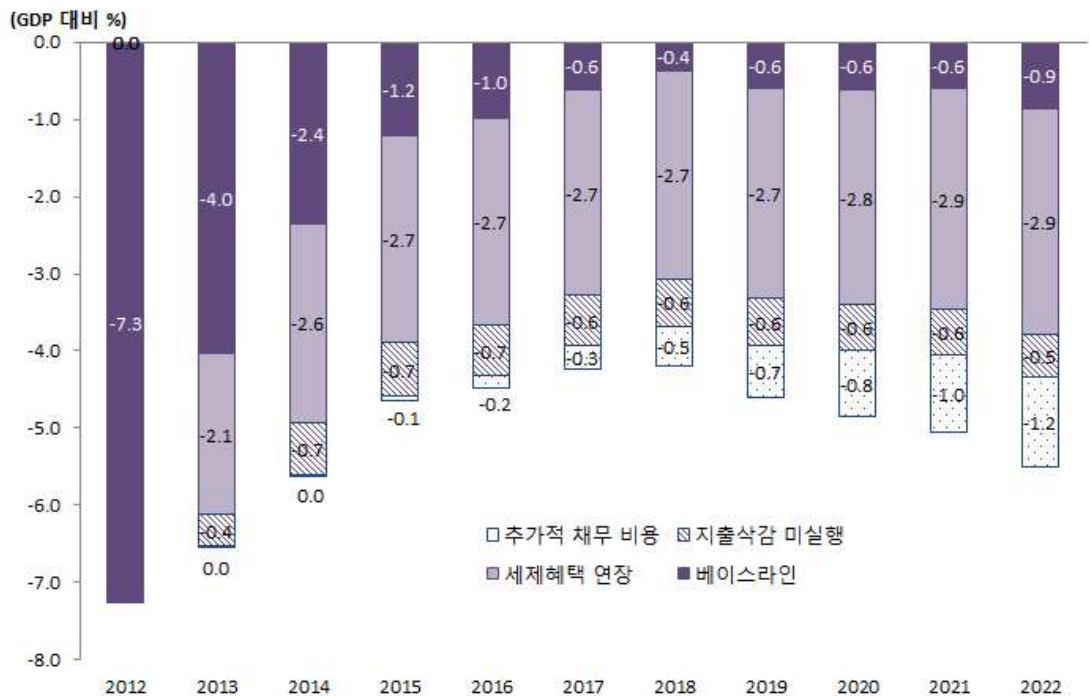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2012.8.22)

□ CBO가 재정건전화 정책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제혜택 연장에 따른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부시감세법 등 세제혜택이 연장될 경우에는 GDP 대비 2.1%, 자동삭감 조치에 따른 재량지출 감축 등 지출삭감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0.4%의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추가적 채무비용 즉, 채무발행에 대한 이자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그림 1-7] 재정건전화 정책별 재정수지 전망



주: 1)베이스라인은 재정건전화 정책이 전면 시행되는 경우의 효과

2)세제혜택 연장(Tax Policy Extend)은 부시감세조치(급여세 감면 제외) 등을 연장하고, 최저한 세(AMT)의 인플레이션 연동시킬 경우의 효과

3)지출삭감 미실행(Prevent Spending Cut)은 의사들에 대한 메디케어 의료수가를 현행 유지하고(삭감 예정이지만 미반영), 예산통제법의 자동삭감 조항에 따른 재량지출 감축(2013년 1월 시행 예정) 미반영

4)추가적채무비용(Additional Debt Service)은 연방채무의 추가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를 의미

자료: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2012.8.22)

II. 대선 후보들의 주요 대선공약과 재정

1.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 비교

□ 미국은 2012년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경제 및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 및 고용증대, 재정적자 감축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

○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선별적 증세와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역할의 확대를 주장

- '버핏 원칙(Buffett Rule)*'의 적용으로 고소득 계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국지전 종료 등을 통한 국방지출 및 소득보장 지출 삭감으로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은 확대

* 버핏 원칙(Buffett Rule):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보다 커야 한다는 것으로 상위 1%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의 인상과 자본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 인상으로 구체화

-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로 인하하는 등 기업과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표방했으나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

○ 공화당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Mitt Romney)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지출 억제와 함께 감세정책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

- 롬니의 정책기조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기반을 두고 감세에 따른 재정수입 축소에 상응하는 지출 억제로 균형재정을 유지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과 성장을 창출함으로써 재정적자를 축소할 계획

*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를 통해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고용과 소득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

- 부시의 감세조치(Bush tax cuts)를 영구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28%로 인하 및 최저한세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등을 제안
- 기존의 국지전 유지 등을 위해 국방비 지출 축소를 반대하는 한편,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을 통한 관련 지출의 축소를 주장

<표 II-1> 2012년 대선후보 주요 경제정책 비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후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
개인 소득세	▪ 중산층 세액감면 1년 연장 ▪ 고소득층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혜택 종료로 2013년도부터 최고세율 환원 ▪ 연간 개인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Buffett rule"을 적용(최소 30% 세율로 부과) ▪ 고소득층의 세금공제비율 축소	▪ 구간별 소득세율 20% 인하: 최고세율이 35→28%, ▪ Buffett rule 반대 ▪ 최저한세(AMT) 폐지
자본이득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 ▪ 고소득층의 배당소득을 통상적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인상	▪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에 대한 현행 세율 15% 유지 -단, 연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일 경우는 감면 ▪ 상속세 폐지
법인세	▪ 연방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인하 ▪ 특정산업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폐지 ▪ 기업의 해외소득에 일정수준 이상 세금 부과	▪ 연방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인하 ▪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 폐지 ▪ 조세 허점(tax loophole)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보건 및 의료 지출	▪ 건강보험개혁법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Medicare)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비용 감축 위해 의료보험지급자문위원회 역할 강화 ▪ (Medicaid) 2014년까지 빈곤층 소득의 133%에 해당하는 가구까지 혜택 확대	▪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 폐지 ▪ (Medicare) 가입연령 상향조정, 정액금액 혜택으로 전환하는 보험료보조시스템(premium support system) 제안 ▪ (Medicaid)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포괄보조금(Block Grant)을 지원
사회보장	▪ 구체적인 내용 없음	▪ 퇴직연령 상향조정
교육	▪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	▪ 바우처 제도 찬성 ▪ 연방교육부 규모를 축소해 주교육부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지원
연방지출	▪ 2017년까지 GDP대비 22.2%로 축소	▪ 2017년까지 GDP대비 20%로 감축 -비안보 재량지출을 2008년 수준 이하로 회귀
재정적자	▪ 2017년까지 GDP대비 2.5%로 축소	▪ 균형재정(기한은 명시하지 않음)

자료: The Economist, "Work in progress(2012.4.21)", 미트 롬니 사이트(www.mittromney.com)의 내용 및 동 후보의 Believe in America 공약집 재인용

<표 II-2> 대선후보의 개인소득세 개편안 비교

과표구간(\$)		0~8,750	8,751~35,500	35,501~86,000	86,001~179,400	179,401~199,350	199,351~390,050	390,050~
세 율	현행	10%	15%	25%	28%	33%		35%
	오바마	10%	15%	25%	28%	33%	36%	39.6%
	롬니	8%	12%	20%	22.4%	26.4%		28%

주: 1) 세율은 장기자본이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세 세율이며, 과세소득 구간은 단일신고 기준

2) 미국은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단일신고(single),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ied widow or widower), 부부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세대주(head of household)네가지로 구분되며, 과세소득 구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자료: Tax Policy Center (<http://www.taxpolicycenter.org/taxtopics/index.cfm>)

<표 II-3> 대선후보의 법인소득세 개편안 비교

과표구간(\$)	현행세율	연방법인세율 ¹⁾	
		오바마	롬니
0~50,000	15%	법인세 상한선 28%	법인세 상한선 25%
5,0001~75,000	\$7,500 + \$50,000 초과분 25%		
75,001~100,000	\$13,750 + \$75,000 초과분 34%		
100,001~335,000	\$22,250 + \$100,000 초과분 39%		
335,001~10,000,000	\$113,900 + \$335,000 초과분 34%		
10,000,001~15,000,000	\$3,400,000 + \$100,000,000 초과분 35%		
15,000,001~18,333,333	\$5,150,000 + \$15,000,000 초과분 38%		
18,333,334~	단일세율 35%		

주: 1) 중앙, 지방정부의 법인세율(누진세율 구조 반영)을 고려한 일반적인 법인세율

자료: taxrates.cc (<http://www.taxrates.cc/html/us-tax-rates.html>)

2. 주요 공약에 대한 평가

가. 조세정책

-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의 조세정책 분야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논쟁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어떤 후보의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
 - 오바마 대통령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선별적 증세방안을 제시
 - 연간 25만 달러 이하 소득의 가구들에게 부세의 감세조치를 1년간 더 연장하는 반면 소득이 높은 가구에게는 최고 39.6%의 세율로 과세
 -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7%p 인하하지만 법인소득공제를 제한하고 기업들의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일자리가 미국 국경 내에서 창출되도록 유도
 - 자본이득세의 세율을 15%에서 고소득계층의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상속세의 최고세율도 45%로 10%p 인상할 계획
 -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35%이지만 2013년부터 55%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오바마의 공약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10%p 인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롬니 후보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등의 큰 폭의 감세안과 더불어 세수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및 조세허점(tax loophole) 보완을 제시
 - 현행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5%를 28%로 인하하고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8%로 인하하는 등 모든 소득계층의 세율을 20%씩 인하하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반면 공제감면의 축소 및 폐지를 통해 세수 감소를 보완
 -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10%p 인하하지만 공제 등 감면규모를 축소하고 조세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할 계획
 - 미국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본국으로 송금과 재투자를 제한하는 현행 거주지국 과세원칙(worldwide tax system)을 원천지국

과세원칙(territorial tax system)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입장

- 법인세의 원천지국 과세원칙은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폴란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준용
-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의 경우 기존 15%로 과세하던 자본이득과세를 면세하고 상속세를 완전 폐지

□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롬니 후보의 세제개편안을 소득이 높을 경우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진적 개편안으로 평가⁶⁾하며 암묵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개편안을 지지

<표 II-4> 2015년 소득분위별 연방세 부담 변화

(단위: %, 달러, %p)

소득분위 ¹⁾	세금감면 효과		세후소득 변화율	연방세 변화 비중	평균 연방세율 ²⁾		
	인원	평균 감면액			현행 (A)	롬니공약 (B)	변화분 (B-A)
1분위(0-20%)	30.1%	-256 \$	0.7%	0.4%	4.0%	3.3%	-0.7%p
2분위(20-40%)	84.6	-1,016	3.2	3.6	11.6	8.8	-2.8
3분위(40-60%)	97.6	-2,130	4.4	7.6	18.0	14.4	-3.6
4분위(60-80%)	99.4	-4,994	6.5	15.1	22.3	17.2	-5.1
5분위(80-100%)	99.9	-27,508	12.6	73.2	29.3	20.4	-8.9
전체	77.4	-7,043	8.7	100.0	24.0	17.4	-6.6
추가분석							
80-90%	99.9	-9,217	8.1	12.4	25.2	19.2	-6
90-95%	99.9	-14,846	9.3	9.8	26.5	19.6	-6.9
95-99%	100	-35,349	12.8	18.7	28.4	19.3	-9.1
상위 1%	100	-237,983	18.5	32.2	34.7	22.6	-12.1
상위 0.1%	100	-1,148,834	21.7	16.0	38.1	24.6	-13.5

주: 1) 소득분위(2011년\$ 기준 현금수입: cash income) 20% \$19,342; 40% \$39,862; 60% \$69,074; 80% \$119,546; 90% \$169,987; 95% \$242,597; 99% \$629,809; 99.9% \$2,868,534

2) 평균현금수입 대비 평균연방세율(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메디케어에 대한 payroll tax, 부동산세 포함)

3) 2012.3.1일까지 발표된 롬니 조세정책을 반영

자료: "The Romney Tax Plan", Tax Policy Center(2012.3.1)

○ 현행법과 비교하여 롬니 공약에 의한 개편은 77% 상당의 납세자가 평균 7천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포 중위층(3분위)에게는 2,13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이 발생하지만, 상

6) "The Romney Tax Plan", Tax Policy Center(2012.3.1)

위 1%는 23.8만 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감면액과 세후소득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

○ 개인소득세, 법인세, 급여세(사회보장·메디케어), 상속세에 대한 롬니 후보의 공약에 따른 평균 연방세율의 인하폭은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더욱 확대

- 1~4분위의 경우 평균 연방세율은 0.7~5.1%p 인하되지만, 5분위와 상위 1%의 평균 연방세율은 각각 8.9%p와 12.1%p로 보다 큰 폭으로 인하

○ 롬니 후보의 주장대로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수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 5%계층에 속하는 연간 24만 달러 이상의 소득 가구에게 발생한 대규모의 세수손실을 보다 낮은 소득계층으로 전가될 가능성

- 오바마 대통령이 롬니 후보를 'Robin Hood in Reverse' 또는 'Romney Hood'로 지칭하는 것과 맥을 같이함

- 조세정책센터(TPC)는 롬니 후보의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수중립적 감세정책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

• 감세정책에 의해 고소득층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수감소분이 860억 달러이지만 과세기반 확충에 따른 세수확대는 530억 달러로 추정되어 롬니 후보의 조세개편안은 세수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

□ Wall Street Journal은 조세정책센터(TPC)의 상기 분석결과를 아래와 같이 비판하고 롬니 후보의 개편안을 지지⁷⁾

○ 조세허점(tax loophole)의 축소 및 보완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감세를 추구하는 롬니의 세수중립적 조세개혁안은 1986년 조세개혁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감세의 역사는 이것이 유효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비판

- 지난 50여 년 동안 시행됐던 주요 개인소득세율 인하정책(1964년, 1981년, 1986년, 2003년)은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세수증대는 주로 부유층에 의해 부담되어 오면서 누진성이 강화됐음을 주장

• 한계세율이 70%이던 시기에 상위 1%가 연방소득세의 18%를 납부하였으나 세율이 35%로 인하된 2008년 상위 1%의 세부담 비중이 40%로 확대

7) Wall Street Journal, "The Romney Hood Fairy Tale," A14, Aug. 8, 2012

- 1986년 조세개혁이 부유층의 조세부담 비중을 21%에서 25%로 높였다는 CBO와 Martin Feldstein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수 중립적 감세정책의 가능성과 효과를 주장
 - 1986년 조세개혁에 의해 부유층들의 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한 것은 조세피난처의 축소와 많은 기업들이 과세지위를 법인에서 개인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S-법인(S-corporation)으로 변경한 것에 기인
- 감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감세, 누진성의 유지, 세수 유지라는 세수 중립적 감세정책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
 - 현재의 조세부담 구조는 부유층에 상당한 정도 의존하고 있으며, 조세허점의 축소에 따라 부유층이 그 부담을 짊어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
 - 특히, 미국 시민의 1/3이상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조세가 아니라 정부지출이기 때문에 감축하여 세수증대에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Wall Street Journal은 오바마 정부의 재정개혁을 관장하는 심슨-보울스 위원회(Simpson-Bowles Commission)의 재정개혁안이나 롬니의 개혁안은 세수 중립성이란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
 - 동 위원회는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28%로 인하하고 조세허점을 줄여 세수규모를 GDP 대비 20%로 상향함으로써 적자규모를 1.5조 달러 감축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채택⁸⁾
 - 동 위원회의 개혁안과 롬니의 개혁안의 차이점은 후자가 GDP의 18% 수준에서 세입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어서 롬니의 계획이 산술적으로 불합리하다면 동 위원회의 개혁안도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
- 롬니의 개혁안이 조세허점을 줄이는 것인데도 조세정책센터(TPC)가 임의적으로 투자와 저축 관련 조세지출을 줄일 수 없다고 가정하여 연구결과의 왜곡을 낳았다고 비판⁹⁾
 - 조세정책센터(TPC)는 저축과 투자 인센티브 때문에 비과세 대상인 지방정부 채권과 생명보험저축을 조세지출 폐지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

8) 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 "The Moment of Truth," Dec. 2010

9) Wall Street Journal, "Mathematically Possible," A14. Aug. 14, 2012.

-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는 두 가지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가 900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재분배 가능한 86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세원이라고 분석¹⁰⁾

나. 보건·의료부문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6개 주 정부가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의무가입조항*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합헌 판결

* 2014년까지 대다수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 대법원은 정부가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의회의 세금 징수권한 내에서 미가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발표

□ CBO는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할 경우(롬니공약)에 대한 재정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적자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¹¹⁾

- 재정수입은 FY2022까지 약 10년 동안 1조 달러가 감소하고, 재정지출은 8,900억 달러가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자는 총 1,09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II-5> 건강보험 개혁법(ACA) 폐지에 따른 재정효과

(단위: 10억 달러)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22	FY2013 ~FY2017	FY2013 ~FY2022
재정 수입	예산	-34	-40	-64	-69	-79	-145	-285	-896
	예산 외	-2	-2	-3	-7	-9	-19	-23	-103
	합계	-36	-42	-67	-75	-88	-163	-308	-1,000
재정 지출	예산	-2	-18	-61	-101	-118	-117	-299	-882
	예산 외	0	*	-1	-1	-1	-1	-2	-8
	합계	-2	-18	-61	-102	-119	-119	-302	-890
재정 적자	예산	32	22	3	-32	-39	27	-14	14
	예산 외	2	2	3	6	8	17	21	95
	합계	34	24	6	-26	-31	44	7	109

자료: "Letter to the Honorable John Boehner providing an estimate for H.R. 6079, the Repeal of Obamacare Act", CBO(2012.7)

10) Jensen, M. (2012), "How the Tax Policy Center could improve its Romney tax study?", AEI, August 9, 2012

11) "Letter to the Honorable John Boehner providing an estimate for H.R. 6079, the Repeal of Obamacare Act", CBO(2012.7)

- 이에 대해, 포브스지는 오바마케어가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늘려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한 CBO의 분석결과에 의문을 제기¹²⁾
- CBO의 분석에서는 건강보험료 비용은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 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므로 점점 더 많은 개인이 “캐딜락세(Cadillac tax)”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캐딜락세란 기준보험료 이상의 고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초과된 보험료에 대해서 40% 소비세(excise tax)를 보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기준보험료: 개인은 10,200달러 이상, 가족단위는 27,500달러이상
- 오바마케어의 장기적인 적자중립성(deficit neutrality)은 건강보험료가 물가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가능
 - CBO의 분석에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캐딜락세 영향을 제거하면 건강보험법으로 인한 재정적자에 대한 효과는 대부분이 상쇄
 -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의 핵심은 기존 캐딜락세를 개인의료보험 구입에 대해 표준감면(standard deduction) 및 보편세(universal tax)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

다. 재정건전성

-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분석결과는 무조건적인 감세 또는 정부지출의 증가만으로는 현재 미국이 처한 재정위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경고¹³⁾
- 동 연구결과는 미국 재정의 바람직한 중장기 모습으로 ‘세수는 GDP의 18 ~ 19%, 정부지출은 GDP의 20~22%, 재정적자는 GDP의 2~3%’ 수준을 제시
 -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5%와 2.0%이라고 가정하고, 세수,

12) “CBO: Obamacare Will Spend More, Tax More, and Reduce the Deficit Less Than We Previously Thought”, Forbes(2012.7.27)

13) Cline, W. R., “Restoring Fiscal Equilibrium in the United States,” No. PB 12-15,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2.

지출, 재정적자를 각각 GDP의 18.5%, 21.5%, 2.5%로 유지하면 중장기적으로 채무수준은 GDP의 55%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분석

- 오바마 대통령의 FY2013 예산안에 따르면, FY2013~FY2020 동안 평균 세입규모는 GDP의 19.4%, 세출규모는 22.5%, 그리고 적자규모는 3.2%, 그리고 FY2020의 부채규모는 76%로 전망
- 롬니 후보의 2013년 공약에 따른 감세와 과세기반의 확충, GDP의 20% 재정지출 상한선 등을 고려할 경우, FY2021의 총채무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GDP의 75%, 86%, 94%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¹⁴⁾

○ 미국 재정적자의 합리적 수준을 2.5%로 설정할 경우 구조조정이 되어야 할 중기의 구조적 재정적자 규모는 FY2012에 GDP의 3% 수준으로 약 4,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FY2012의 재정적자를 GDP의 7.2%로 전망하고 자동안정화장치의 순환변동효과를 제거한 구조적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5.5%로 추정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5%로 설정하고 축소해야 할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3% 수준으로 추정

○ 이러한 수준의 구조적 재정적자 축소는 미국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필요하지만 2013년 한 해에 시행하기 보다는 중기적으로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

- 동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조적 재정적자 축소 규모는 2013년에 예상되는 재정절벽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 폭의 60% 수준이며 한해에 달성하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차기 대통령 임기동안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오바마 대통령은 세입확충에 중점을 두고 향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롬니 후보는 대규모의 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하는 현재의 정치상황을 비판

□ 버핏세와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별적 증세계획은 기대한 만큼의 세수확대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대통령의 FY2013 예산안에 따른 부시감세조치를 연소득 25만 달러 미

14)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Primary Numbers: The GOP Candidates and the National Debt*, Washington, 2012

만가구에 적용하고 자녀부양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같은 기타 감세조치를 확대할 경우 미국 의회의 조세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2.39조 달러의 세수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CBO는 2.08조 달러의 세수손실을 추정¹⁵⁾

- CBO는 2001~03년 부시 감세조치를 모두 폐지하면 향후 10년 동안 2.84조 달러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¹⁶⁾
- 따라서 상기 언급한 JCT와 CBO의 세수손실 추정결과는 부시 감세조치 완전 폐지에 따른 세수확대의 73~84%에 달하는 수준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세수확대를 급격히 도모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 오바마가 제시한 백만 달러 고소득가구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버핏세에 따른 세수확대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에 약 43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¹⁷⁾

□ 예산정책연구소(CBPP)는 조세정책센터(TPC)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롬니 후보의 공약이 재정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분석¹⁸⁾

- 조세정책센터(TPC)는 롬니 후보의 공약은 2015년에 약 2,150억 달러의 세금감면을 하고, 이에 따른 세수손실은 향후 10년간 4.9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
 - 동 센터의 전문가들은 롬니 후보는 낮은 세율을 상쇄시킬 수 있는 넓은 과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제시한 모든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롬니 후보는 대규모 세금감면이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적자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였던 1981년 레이건과 2001년 부시의 세금감면 후 적자가 확대
 - 반면, 1993년 클린턴의 세금인상은 경제성장을 저해하여 세입을 감소시킬 것

15) JCT (Joint Committee on Taxation, US Congress), *Estimated Budget Effects of the Revenu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13 Budget Proposal*, Washington, 2012.;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3 Budget*, Washington, 2012.

16)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Washington, 2012

17) Dixon, Kim and Temple-West, Patrick, "Q+A: The 'Buffett Rule,' a Minimum Tax on the Rich," Reuters, April 16, 2012.

18)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an Governor Romney's Tax Plan Meet Its Stated Revenue, Deficit, and Distributional Goals at the Same Tim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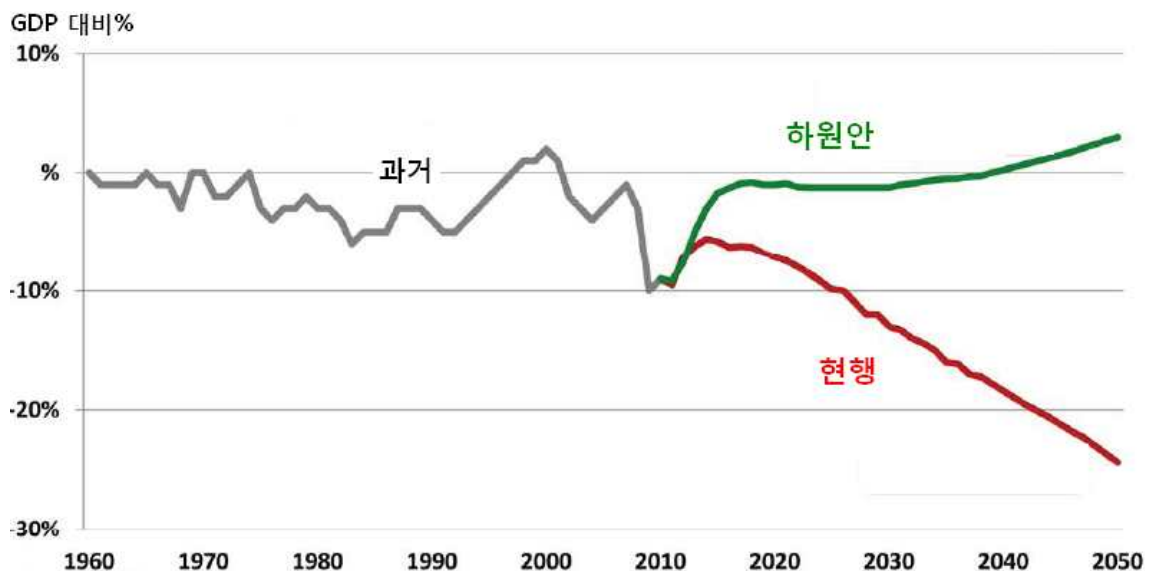
이라는 우려와는 반대로 재정적자가 오히려 축소

- 하원 예산위원회(House Budget Committee)*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¹⁹⁾

*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 (435석 중 239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원예산위원장은 폴 라이언 의원은 롬니 후보의 러닝메이트

- 하원 예산안에서 FY2013의 재정적자는 약 8,000억 달러로 약 1조 달러의 오바마 정부안보다 크게 낮은 수준
 - 하원 예산안의 경우, 향후 10년간 현정부안 대비 약 3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감소가 기대됨
- 하원안에 따르면, 정부지출은 FY2015까지 GDP 대비 20%이하(현 정부안은 GDP 대비 약 24% 수준)로 감소할 전망
 -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이 현정부안 대비 약 5조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

[그림 II-1] 하원의 재정적자 전망치



자료: House Budget Committee(2012.3)

19) House Budget Committee, "The Path to Prosperity," 2012.

Ⅲ. 미국 재정의 향배 및 시사점

- 선거에 의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고 2013년 예정된 강제삭감조치와 2012년 말 종료되는 부시감세조치에 의해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
- 최근 이러한 미국 재정상황에 대해 경고하며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발표
 - 무디스는 현재 진행 중인 FY2013 예산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의 협상이 GDP 대비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수준을 안정화하고 하향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
 - 현재의 'Aaa/부정적 전망'이라는 미국의 신용등급은 FY2013 예산에 대한 협상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는 유지되겠지만, 협상결과가 미국의 채무수준을 충분히 안정시키고 하향세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발표
- 대선일정과 이후의 권력누수 기간을 고려할 때 법정 채무한도를 연말 이전에 상향조정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재정절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신정부 출범 전에 초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
 - 현재의 법정 채무한도는 16조 3,940억 달러로 미국의 2011년 경상GDP 보다 1조 3천억 달러 정도 큰 규모 이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2013년 1월 까지 추가적으로 채무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은 9월 12일 현재 3,5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해서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하원 장악에 이어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상원 장악 가능성, 전통적 공화당 지지 세력인 티파티(Tea party)의 집결,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발생한 과도한 채무증가 등으로 인해 현 정부가 채무한도를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은 매우 험난한 정치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
 - 이번 미국 선거에서 100석의 상원의원 중 33석이 선출되는데, 이 중 민주당 소속 의석은 23석이고 공화당 소속 의석은 10석으로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의 53석(친민주당 경향의 무소속 2석 포함)이 위협받을 수 있음

○ 오바마 정부도 채무한도를 연말 이전에 상향조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 클린턴 정부에서처럼 일부 지출항목을 채무한도에 제약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조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음

- 과거 클린턴 정부 1기말에 발생한 예산위기(budget crisis)시 법정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필요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하고 두 차례의 연방정부 폐쇄가 발생

- 당시 클린턴 정부와 공화당 깅그리츠(Newt Gingrich) 하원의장 사이의 FY1996 예산 중 국내 지출 삭감에 대한 입장차이로 1995년 말부터 1996년 1월 초 사이에 2회의 연방정부 폐쇄가 발생하는 등의 정치과정 속에서 법정 채무한도 상향조정에 대해 깅그리츠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반대

- 당시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돌(Bob Dole)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해결

- 1996년 2월 8일 기존의 채무한도 4조9천억 달러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법정 채무한도를 증액하지는 못했으나 사회보장급여, 기금, 일부 정부회계를 법정 채무한도에 제약받지 않도록 허용하는 임시조치로 위기를 해결

- 상기 임시조치가 만료되기 하루 전인 1996년 3월 29일에 법정 채무한도를 5조 5천억 달러로 상향조정

□ 채무한도 이외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세입증대와 지출삭감이 요구되지만 명확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며 향후 정치과정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나 재정건전성을 단기간에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누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양 후보의 공약사항들이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음

-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사항들의 핵심인 선별적 증세는 재정적자 감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대폭적 감세와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롬니 후보의 공약은 더 큰 재정적자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과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함께 제시되며 논란

○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시나리오가 유력시되고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의 힘겨루기 양상

이 지속될 가능성

- 이 경우 증세에 반대하고 국방지출의 삭감을 최소화하려는 공화당과 선별적 증세와 국방지출을 대폭 감축하는 예산통제법을 준수하면서 여타 지출삭감을 최소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 사이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
- 공화당이 양원의 다수당으로 확정되면, 예산통제법에 의해 국방지출이 크게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통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 입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재정여건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

□ 전 세계적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유로존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경제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정위기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 확대 기조를 유지 및 강화하고 있으나 추가적 정책 수단은 고갈되어 가는 상황
 - 9월 6일 유럽중앙은행은 무제한으로 회원국들의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
 - 9월 1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추가적으로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채권담보증권(MBS)을 추가매입하고 채권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2015년 중반까지 연 0~0.25% 수준의 연방기금금리를 유지하는 내용의 3차 양적 확대 방안을 발표
 - 일본의 경우 지난 '잃어버린 20년'동안 누적된 재정문제를 단계적 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9월 19일 일본 중앙은행은 10조엔 규모의 추가적 국채매입한도 확대하며 유동성 공급 강화
- 이처럼 양적 확대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초저금리 수준의 장기화는 추가적 유동성 공급의 효과를 제한할 것이라는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며 최근 주요국의 양적 확대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
 -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전 세계적 양적 확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적 재정금융정책 사이의 균형 있는 정책운용이 필요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및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 경기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 효과가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극복을 이유로 팽창적 재정금융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
 - 국가채무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매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국채발행규모를 국회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고 국가채무 한도를 상향조정할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에 기초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들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발표할 필요
 - 미국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선 공약들은 미국 정부 및 의회기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전문연구기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기여
 -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공약사항들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발표하려던 기획재정부의 시도를 선거중립 의무준수를 이유로 금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참정권의 올바른 행사와 선거중립의무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중립적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평가기구를 구성해서 각종 선거 공약사항들이 우리나라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릴 필요

참고문헌

- 이은경,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10. 3.
- 인태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재정준칙 法制化 노력: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각 년도.
- 한국조세연구원, “KIPF 재정동향”, 각 호.
- Cline, W. R., “Restoring Fiscal Equilibrium in the United States,” No. PB 12-15,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2.
- Dixon, Kim and Temple-West, Patrick, “Q+A: The ‘Buffett Rule,’ a Minimum Tax on the Rich,” Reuters, April 16, 2012.
- Mitt Romney, "Believe in America", September 6, 2011. (공약집)
- Jensen, M. (2012), “How the Tax Policy Center could improve its Romney tax study?”, AEI, August 9, 2012.
- CBO, "Updated Budget Projections: Fiscal Years 2012 to 2022", March 13, 2012.
- CBO, “An Analysis of the President’s 2013 Budget”, March 16, 2012.
- CBO,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May 22, 2012.
- CBO, ""Letter to the Honorable John Boehner providing an estimate for H.R. 6079, the Repeal of Obamacare Act", July 24, 2012.
-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August 22, 2012.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Special Series : Economic Recovery Watch", May 10, 2011.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an Governor Romney’s Tax Plan Meet Its Stated Revenue, Deficit, and Distributional Goals at the Same Time?,” 2012.
- Citizens for Tax Justice, "How Mitt Romney and President Obama Would Fare Under Their Two Competing Tax Plans", June 4, 2012.
-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Primary Numbers: The GOP Candidates and the National Debt, Washington, 2012
- Department of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September, 2012

Department of Treasury,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매 월호
Forbes, "CBO: Obamacare Will Spend More, Tax More, and Reduce the Deficit
Less Than We Previously Thought", July 27, 2012.
House Budget Committee, "The Path to Prosperity," March 20, 2012.
Joint Committee on Taxation, "Estimated Budget Effects of the Revenu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President's Fiscal Year 2013 Budget Proposal", Washington,
2012.
Kaiser Family Foundation, "Side-by-side comparison of major health care reform
proposals", April 21, 2010.
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 "The Moment of
Truth," December. 2010.
OMB,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3", February, 2012.
Tax Policy Center, "The Romney Tax Plan", March 1, 2012.
The Economist, "Work in progress", April 21, 2012.
Wall Street Journal, "The Romney Hood Fairy Tale," A14, August 8, 2012
Wall Street Journal, "Mathematically Possible," A14. August 14, 2012.

<http://www.barackobama.com/>

<http://www.mittromney.com/>

<http://www.taxpolicycenter.org/>

<http://www.taxrates.cc/html/us-tax-rates.html>

부록 1

최근 재정건전화 조치

시기	내용
2008.2월	▪ FY2009 예산안은 2012년까지 지출축소 등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예산 편성 - 총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로 유지할 것을 제안 - 복지부문 법정지출 개혁을 통해 5년 동안 2,080억달러 절감하여 재정의 장기 안정성 구축
2009.2월	▪ FY2010 예산안 및 대통령 예산교서에서 경기부양책 등으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FY2013까지 대폭 축소하여 중기재정건정성을 추구하는 내용 포함 - (지출측면) PAYGO원칙의 부활, 이라크 주둔 군대철수, 재정지출 효율화 - (수입측면) 세무상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방지, 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10.12월 종료되는 부시행정부의 감세법 일몰종료 등
2010.2월	▪ FY2011 예산안에서 경기부양책 등으로 악화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 제시 - 3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의료보험·실업급여 등의 부당수취 방지, 세원의 투명한 조달 제고 등을 제안
2010.7월	▪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Improper Payments Elimination and Recovery Act" 시행 - 동법은 정권 초부터 예산낭비 근절정책을 시행한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2012년까지 500억달러 이상의 예산낭비 감축)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11.2월	▪ FY2012예산안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구 - (지출측면) 5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동결, 200여개의 재정사업 종료 및 삭감,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 계획에서 780억 삭감 등 - (수입측면) 지난 12월 '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정책과 유산세 기한대로 종료, 대체최저한세(AMT)를 '1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되, 고소득자에 대해 항목별 공제한도를 28%로 제한
2011.4월	▪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12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 향후 12년 동안, 세제개혁으로 1조달러, 국내 및 국방지출 감축으로 2조달러, 이자지출 감축으로 1조달러의 효과를 기대 -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크게 4가지 요소(비안보재량지출, 국방지출, 보건·의료 삭감 및 세제개편)로 구성

02011.8월	▪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을 의결 - (재정건전화 방안) 1단계로 FY2012~FY2021 동안 9,71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2단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5조달러의 추가적인 재정감축방안을 제시 - (채무상환선 조정) 최소 2.1조달러에서 최대 2.4조달러만큼 증액
2011.11월	▪ 특별위원회에서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합의도출이 실패하여 2013년 1월부터 향후 10년간 1.2조달러 자동 삭감 예정 - 2011.9월,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10년간(FY2021까지) 3.2조달러 규모의 재정감축안을 특별위원회에 송부하였으나 합의도출 실패
2012.2월	▪ FY2013 예산안은 재정건전화(세제조정 포함)를 가장 기본 단계로 설정 - FY2013 예산은 향후 10년동안 1조달러의 재량지출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을 기준으로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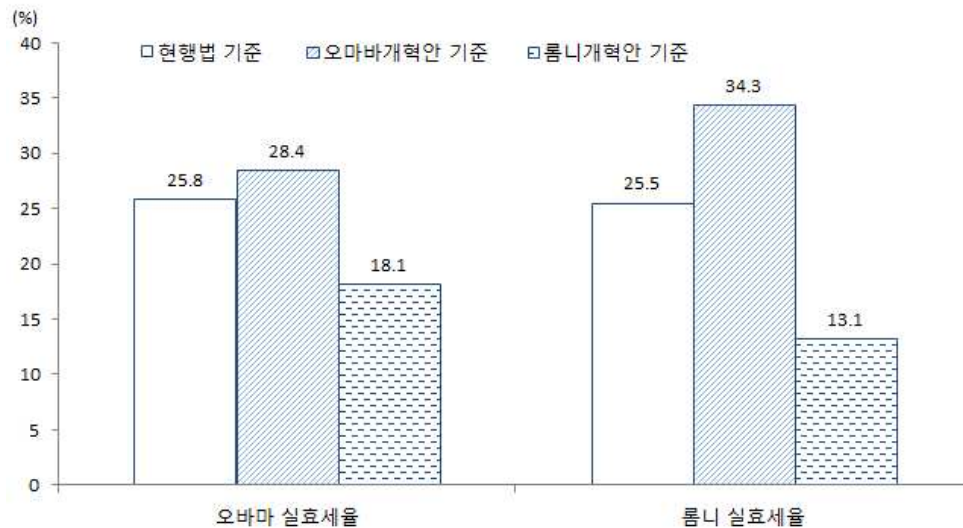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연구원의 "주요국 예산안"과 "KIPF 재정동향" 내용을 참조·수정하여 재구성

부록 2

Citizens for Tax Justice 분석 : 후보별 소득세 시나리오에 따른 세부담

- 미국의 시민단체인 "Citizens for Tax Justice"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후보가 제안한 소득세 개혁안을 토대로 2013년도에 두 후보가 부담하는 소득세를 계산²⁰⁾
- 2,300만달러의 소득이 있는 롬니 후보는 롬니의 세제개혁안에 의하면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 노인의료보험세(Medicare tax)로 소득의 13.1%를 부담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에 의하면 34.3% 부담
 - 87만 4,000달러의 소득이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의 세제개혁안에 의하면 총소득의 28.4%를 세금으로 부담하나 롬니 개혁안에 의하면 18.1% 부담

소득세 시나리오에 따른 오바마와 롬니의 소득세 부담 비교
(2013소득에서 연방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노인의료보험세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Citizens for Tax Justice, "How Mitt Romney and President Obama Would Fare Under Their Two Competing Tax Plans", 2012. 6. 4.

20) "How Mitt Romney and President Obama Would Fare Under Their Two Competing Tax Plans", Citizens for Tax Justice(2012.6)

오바마 대통령의 소득신고서 및 소득세 시나리오에 따른 세부담

	오바마의 2013 소득신고서 ¹⁾	2013년도 소득세 시나리오		
		현행법 기준	오바마개혁안 기준	롬니개혁안 기준
▪ 세금신고서상 총소득 (Tax return total income)	880,300	880,300	880,300	880,300
- 임금(Wages)	411,458	411,458	411,458	411,458
- 과세대상이자소득(Taxable Interest)	11,145	11,145	11,145	11,145
- 총 배당소득(Total dividends)	3	3	3	3
- 자본이득(Capital gains)	-	-	-	-
- 기타소득(other income)	457,694	457,694	457,694	457,694
소득조정(Total adjustments)	(57,224)	(57,224)	(57,224)	(57,224)
▪ 조정된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823,076	823,076	823,076	823,076
항목별공제 등 총 공제(Exemptions)	(305,633)	(270,842)	(273,486)	(290,233)
▪ 과세소득(Taxable income)	517,443	552,234	549,590	517,443
총 세금(Total Tax)		225,305	248,358	158,109
- 소득세(income tax)		181,228	204,281	119,759
- 연방사회보험세(OASDHI taxes) ²⁾		44,077	44,077	38,350
실효세율을 위한 소득 (Income for effective rate)	874,141	874,141	874,141	874,141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25.8	28.4	18.1

주: 1)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2011소득신고서를 전제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13소득 계산

2) 노령, 유족, 장애, 건강보험(Old-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 OASDHI)세임

자료: Citizens for Tax Justice, "How Mitt Romney and President Obama Would Fare Under Their Two Competing Tax Plans", 2012. 6. 4.

롬니후보의 소득신고서 및 소득세 시나리오에 따른 세부담

	롬니의 2013 소득신고서 ¹⁾	2013년도 소득세 시나리오		
		현행법 기준	오바마개혁안 기준	롬니개혁안 기준
▪ 세금신고서상 총소득 (Tax return total income)	22,908,186	22,908,186	22,908,186	22,908,186
- 임금(Wages)	-	-	7,825,949 ³⁾	-
- 과세대상이자소득(Taxable Interest)	3,485,431	3,485,431	3,485,431	3,485,431
- 총 배당소득(Total dividends)	5,206,739	5,206,739	5,206,739	5,206,739
- 자본이득(Capital gains)	13,296,974	13,296,974	5,471,025	13,296,974
- 기타소득(other income)	919,042	919,042	8,744,991	919,042
소득조정(Total adjustments)	(15,737)	(15,737)	(15,737)	(15,737)
▪ 조정된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22,892,449	22,892,449	22,892,449	22,892,449
항목별공제 등 총 공제(Exemptions)	(4,786,965)	(4,097,793)	(4,100,437)	(4,786,965)
▪ 과세소득(Taxable income)	18,105,484	18,794,656	18,792,012	18,105,484
총 세금(Total Tax)		5,762,779	7,763,645	2,951,719
- 소득세(income tax)		4,893,238	6,894,104	2,920,796
- 연방사회보험세(OASDHI taxes) ²⁾		869,541	869,541	30,923
실효세율을 위한 소득 (Income for effective rate)	22,604,026	22,604,026	22,604,026	22,604,026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25.5	34.3	13.1

주: 1) 롬니후보가 제출한 2010소득신고서를 전제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13소득을 계산

2) 노령, 유족, 장애, 건강보험(Old-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 OASDHI)세임

3) 7,825,949달러는 투자파트너십의 투자이익분배금(carried interest)으로서, 현행법 하에서는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15%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안에 따르면 이를 경상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자료: Citizens for Tax Justice, "How Mitt Romney and President Obama Would Fare Under Their Two Competing Tax Plans", 2012. 6. 4.

부록 3

미국 건강보험개혁법 상·하원 법안 및 통과법안 비교

	하원안	상원안	통과법안
법안 이름	▪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 Act (H.R.3962)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H.R.3590)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ublic Law 111-148)
통과 시기	▪ 2009년 11월 7일	▪ 2009년 12월 24일	▪ 2010년 3월 25일
비용(10년단위)	▪ \$891 billion	▪ \$875 billion	▪ \$938 billion
'10~'19년 재정적자 감축규모	▪ \$109 billion	▪ \$132 billion	▪ \$124 billion
public option(사보험과 경쟁하는 공공보험)	▪ Yes	▪ No, 민간보험사와 경쟁하기 위한 비영리 보험 조합 설립 가능	▪ No, 공공보험은 민간에서 설립하는 비영리기관이 운영
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	▪ 국가적 수준 (national insurance exchange)	▪ 각 주별 지역거래소(regional exchange) 구성	▪ 주단위(state-based) 보험거래소 구성
건강보험 확대 인구	▪ 36백만 (18백만 무보험)	▪ 31백만 (23백만 무보험)	▪ 32백만(11백만 무보험)
개인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 2013년 시행 ▪ 2.5% of tax penalty	▪ 2014년 시행 ▪ 벌금 1인당 \$750와 가계소득의 2% 중 큰 수치	▪ 2014년 시행 ▪ 벌금 1인당 \$695와 가계소득의 2.5% 중 큰 수치(경제적 어려움, 종교적 거부, 아메리칸 인디언, 3개월 이하 보험가입자, 불법 체류자, 수감자는 제외)
낙태	▪ 사보험 혜택은 낙태를 포함 혹은 비포함 공공보험은 비포함	▪ 공공지출을 낙태관련 서비스에 사용제한	▪ 낙태에 대한 지원은 필수의료혜택조항(essential health benefits package)에서 제외
직장의료보험 제공	▪ 의무사항으로, payroll이 \$500,000+ 경우 payroll의 8% 벌금 부과	▪ 의무사항은 아니나 50인 이상 고용한 고용주가 의료보험 미제공시 고용인 1인당 \$750 수수료 부과	▪ 의무사항은 아니나 50인 이상 고용한 고용주가 의료보험 미제공시 고용인 1인당 최고 \$2,000 수수료 부과
자금조달	▪ \$426bn: Medicare와 Medicaid 비용 절약 ▪ \$461bn: 고소득자(연봉 \$500,000+ 개인, \$1,000,000+ 가계)에 5.4% 부가세 ▪ \$97bn: 의료기기에 2.5% 세금징수 등 기타수입	▪ \$438bn: Medicare와 Medicaid 비용 절약 및 보험료 증가 ▪ \$149bn: 가격이 높은 직장의료보험에 소비세 부과 ▪ \$264bn: 의료기기에 과세, 수수료 부과 등 기타 수입	▪ 2018년 이후부터 기준보험료 이상(개인: \$10,200, 가계: \$27,500)의 고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초과된 보험료에 40% 소비세 부과 ▪ 고소득자(개인: \$200,000+, 가계: 250,000+)의 불로소득에 대하여 3.8%의 세금 부과 ▪ 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 ▪ 실내 태닝서비스에 10%의 세금 부과
Medicare & Medicaid	▪ 빈곤선 150%까지 65세 미만 모든 사람을 Medicaid로 커버	▪ 빈곤선 133%까지 65세 미만 모든 사람을 Medicaid로 커버	▪ 빈곤선 133%까지 65세 미만 모든 사람을 Medicaid로 커버
보험료 공제	▪ 빈곤선 400%까지 보험료 공제혜택 적용하되, 빈곤선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빈곤선 100~400%까지 환급과 선급이 가능한(refundable and advanceable) 보험료 공제혜택 적용하되, 빈곤선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 빈곤선 133~400%까지 환급과 선급이 가능한(refundable and advanceable) 보험료 공제혜택 적용하되, 빈곤선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자료: 이은경,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kaiser family foundation, “Side-by-side comparison of major health care reform proposals”(2010.4.21)